

# 13.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中改正令(案) 立法豫告

건설교통부공고 제1997-354호 1997. 10. 6

## 주요 골자

- 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대형건축물에서 제외하여 과밀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도로원표를 중심으로 반경 5km이내에서 신·증축을 금지하고 있는 『학원(보통교과 및 성인고시)』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서 제외하여 규제를 폐지함.
- 나. 수도권 주민의 여가·휴식공간 확충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에서 관광지조성 사업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기준을 현행 『10만제곱미터이상』에서 『3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공립시설로 운영되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은 공원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하고 있으므로 규제를 폐지함.
- 다. 현재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으로의 대학 이전』과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전문대학·소규모대학의 이전』은 심의없이 허용하고, 『서울에서 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청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인근의 환경관련 공공청사』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등 4개기관 연수시설』의 신·증축·용도변경에 대하여는 심의제 대신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등을 거치도록 하므로써 수도권 심의를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함.

라.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하여 교육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역은 초등학교 교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대학 신설』을 허용함.

마. 공장총량 규제대상에서 『시험연구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종업원 복지후생 시설』은 제외하여 기업의 시설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에 해양수산부장관을 추가함.

사.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의 지원시설과 국제업무 및 교류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 국제공항주변의 『영종도·용유도·무의도와 연수구 송도앞 공유수면매립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여 수도권의 국제기능이 확충되도록 함.

### 개정 이유

수도권 시책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관광지조성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축소하며, 기업활동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장총량 적용대상시설을 조정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